■ 수산업법 시행규칙 [별지 제5호서식]

어업면허·어업허가 공동신청
([ ]지분 변경, 대표자의[ ]선정·[ ]변경)신고서

※ 색상이 어두운 난은 신고인이 작성하지 않으며, [ ]에는 해당하는 곳에 √ 표를 합니다.

접수번호	접수일자	처리기간 즉시

신고인	성명(명칭)		생년월일
	주소		

신고 내용	어업의 종류		신청면적 ha	
			포획물·채취물	
	어업면허(어업허가)신청 연월일	년 월 일		
	공동신청인의 공유자 지분 변경 사항	성명	변경 전 지분	변경 후 지분
	공동신청인 대표자의 선정 또는 대표자의 변경	변경 전 대표자	선정 또는 변경 후 대표자	

「수산업법」 제6조,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제2항·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에 따라 위와 같이 어업면허·어업허가 공동신청인의 지분 변경, 대표자의 선정 또는 변경을 신고합니다.

년 월 일

신고인 (서명 또는 인)

시·도지사
시장·군수·구청장 귀하

첨부 서류	1. 공동으로 어업면허 또는 어업허가를 신청한 사람이 신청한 지분을 변경한 경우: 해당 지분변경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2. 공동으로 어업면허 또는 어업허가를 신청한 사람이 대표자를 선정하거나 대표자를 변경한 경우: 공동신청인의 대표자의 자격 및 그 변경(대표자를 변경한 경우만 해당합니다)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	수수료 조례에 따름

210㎜×297㎜[백상지(80g/㎡) 또는 중질지(80g/㎡)]